

대회 개최승인 및 운영 규정

- 제 정 2009. 3. 19.
- 개 정 2009. 5. 20.
- 개 정 2013. 3. 21.
- 개 정 2015. 1. 15.
- 개 정 2016. 1. 20.
- 개 정 2017. 3. 21.
- 개 정 2017. 7. 20.
- 개 정 2018. 7. 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의 개최승인 및 운영에 관한 제 규정과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대한장애인농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팀이 참가하는 각종 대회
2. 협회가 승인하는 국내대회의 개최신청, 개최승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단,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 중 국제연맹(IWBF, Aoz 등)이 주관하는 국제대회는 국제연맹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대회의 개최승인

제3조 (신청자격) 대회개최의 승인신청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이 합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대회 주최·주관 및 후원의 정의) 대회의 주체는 주최, 주관, 후원으로 구분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최라 함은 대회를 총괄하며 책임지는 단체등을 말한다.
2. 주관이라 함은 주최 단체등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단체등을 말한다.

3. 후원이라 함은 대회에 필요한 재정, 시설, 물자, 인력 등을 지원하는 단체등을 말한다.

제5조 (신청기한) 대회개최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등은 신규대회의 경우 대회개막 전년도 10월까지, 기존대회는 대회개막 3개월 전까지 협회에 대회개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승인신청 구비서류) 대회개최 승인신청 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회개최 승인신청 공문
2. 대회개최 승인신청서(별지 1. 대회개최 승인신청서 양식 참조)
3. 대회 실행계획서(별지 2. 대회 실행계획서 양식 참조)
4. 개최지 시·도지부 개최 동의서(또는 승인 공문)

제7조 (대회개최의 승인) 협회는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규대회의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의를 거쳐 대회개막 전년도 12월까지, 기존대회는 대회개막 2개월 전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단체등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대회개최 승인의 위임) 지역 내 팀들이 참가하는 지방대회의 경우 협회는 시·도지부에 대회개최 승인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승인을 위임받은 대회라 할지라도 시·도지부는 이 규정에 준해 대회를 운영해야 하며, 대회일정 계획은 개막 1개월 전까지, 결과는 폐막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전국대회 명칭 사용) 대회개최 시·도지부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전국대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승인의 취소 또는 조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회개최 승인의 취소 또는 조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시·도지부에 승인을 위임한 대회에도 적용된다.

1. 기존대회의 운영에서 대회개최 승인을 취소 또는 조정해야 할 현저한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2. 휠체어농구 발전차원에서 대회 빈도나 방법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11조 (승인된 대회의 통보) 대회의 주최 단체등은 대회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지 해당 시·도지부에 승인서 사본과 함께 대회 개최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승인하지 않은 대회의 참가) 협회 소속팀은 협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 법제·상벌위원회에 의하여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인 제재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승인하지 않은 대회 참가로 인해 팀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협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대회의 구분) 대회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한국휠체어농구연맹 주관대회(리그제)
2. A급 대회
 - 국내 8개 팀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
 - 국내 8개 팀 미만이 참가하는 대회 중 외국 팀이 1개 팀 이상 참가하는 대회
 - 4개국 이상 외국 팀이 참가하는 대회
 -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회
3. B급 대회
 - 국내 6개 팀 이상 8개 팀 미만이 참가하는 대회
4. C급 대회
 - 국내 6개 팀 미만이 참가하는 대회
5. 기타대회(승인대상 제외)
 - 지적장애인, 농아인 농구대회
 - 생활체육규모의 클럽별 휠체어농구대회
 - 3 대 3 휠체어농구대회
 - 홍보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형 휠체어농구대회

제14조 (대회개최 승인비)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대회개최 승인비”를 대회개최 1개월 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한국휠체어농구연맹 주관대회(리그제) : 20,000,000원
2. A급 대회 : 5,000,000원
3. B급 대회 : 4,000,000원
4. C급 대회 : 2,000,000원

제15조 (대회개최 승인비 환급불가) 협회에 납부한 대회개최 승인비는 환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대회개최 승인요건 및 대회 준비

제16조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대회 주최 단체등은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대회운영을 책임질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대회조직위원회의 역할) 대회조직위원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회장 : 대회의 대표자로서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와 운영을 책임진다.
2. 부대회장 : 대회장을 보좌하며 대회 운영을 돕는다.
3. 운영위원장 : 대회와 관련한 각 분야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아래와 같이 분야별 담당관을 둔다.
 - 1) 대회기술위원장 : 경기장시설·장비, 경기일정 승인 및 경기운영 기술진 관리운영, 소청관련 업무 등 대회경기운영 전반적인 업무 총괄 수행
 - 2) 대회심판위원장 : 심판 경기요원 관리 운영 업무 수행
 - 3) 대회등급분류위원장 : 등급분류 관련 업무 및 등급분류사 관리 운영 업무 수행
 - 4) 지원담당관 : 시설, 물자의 조달 업무 수행
 - 5) 안전담당관 : 안전사고에 대비한 업무 수행
 - 6) 시설담당관 : 각종 시설의 관리 업무 수행
 - 7) 의무담당관 : 선수의 부상 등 의료사고 관리 업무 수행
 - 8) 홍보담당관 : 대회 홍보를 위한 업무 수행
4. 대회조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담당관을 추가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경기운영 기술진 파견) 협회는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기운영 전문 기술진을 파견한다.

1. 대회기술위원장(T/D)
2. 대회심판위원장
3. 대회등급분류위원장
4. 경기감독관(T/C) : 경기요원 관리감독, 등급포인트 관리 등 심판 보좌 업무 수행
5. 심판 : 해당 경기 심판 업무 수행
6. 등급분류사 : 선수의 등급분류 평가 및 판정 업무 수행

- 7. 경기운영요원 : 기록·계시 등 심판의 경기진행 보좌 업무 수행
- 8. 통계요원 : 세부적 경기내용 기록·배포·관리 업무 수행(대회규모나 주체 단체등의 필요에 따라 파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 (경기수당 및 제비용 지급) ① 주체 단체등(대회조직위원회)는 경기운영 기술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경기수당을 지급한다.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 제비용은 별도로 지급한다.

경기수당 지급표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회기술위원장(T/D)	1일	100,000원	1인
대회심판위원장	1일	100,000원	1인
심 판	1경기	50,000원	1경기/3명
경기감독관(T/C)	1일	100,000원	2인
경기운영요원	1경기	25,000원	1경기/4명
통계요원(필요시)	1경기	25,000원	1경기/2명
대회등급분류위원장	1일	100,000원	1인
등급분류사	1일	100,000원	2인

② 생활체육농구대회(지적농구대회, 농아인농구대회, 3x3 농구대회 등)를 개최하는 주체 단체등이 경기운영 기술진의 수당을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다.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 제비용은 별도로 지급한다.

경기수당 지급표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심 판	1일	120,000원	
경기운영요원	1일	100,000원	

제20조 (대회의 준비) ① 대회의 주체(주최, 주관, 후원) 단체등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대회개최 및 참가신청 공문발송
 - 대상 : 시/도지부 및 참가대상 팀
 - 시기 : 대회개최 2개월 전

- 내용 : 대회 일정 및 장소, 대회규정, 신청마감일, 감독자회의 일시 및 기타사항
2. 감독자회의 개최
 - 참석대상 : 주최, 주관 단체등 및 참가팀 감독자 1인
 - 시기 : 대회개최 최소 20일 전
 - 내용 : 대회규정 공지, 대진추첨(조 편성) 및 기타 전달사항
 - ② 대회의 주체(주최, 주관, 후원) 단체등은 대회개최 및 참가신청 공문을 발송한 후 대회 일정 및 장소, 대회규정, 대회 방식, 신청마감일 등 대회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협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 신청마감일 이후의 대회 참가신청, 참가지도자, 선수 등을 변경 혹은 추가하는 신청 등에 대하여는 대회의 주체(주최, 주관, 후원) 단체등이 대회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즉시 협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대회의 주체(주최, 주관, 후원) 단체등은 팀을 이적하는 지도자, 선수 등과 국내에서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하고 활동하다가 해외이적 후 복귀하는 지도자, 선수 등에 대한 신청마감일 이후 변경 혹은 추가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대회 개최일 2주 전까지는 그 변경 혹은 추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 선수 등은 등록변경절차나 등록절차를 대회 개최일 전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21조 (경기장) 경기장 및 각종 경기장비는 휠체어농구 경기규칙서 제2장 [코트와 시설 및 장비] 규정을 준수한다.

제22조 (경기장시설 사전점검) 주체 단체등은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에 반드시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1. 점검인 : 대회기술위원장 또는 협회 담당자
2. 점검시기 : 대회개최 최소 1개월 전
3. 점검내용 : 경기장 시설과 각종 경기장비의 사전 점검 및 승인
4. 비용부담 : 점검인 파견과 관련한 소요 비용은 주체 단체등이 부담

제4장 대회 운영

제23조 (대회 방식) 주체 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경기 방식 중 어느 하나를 택하고, 채택된 방식은 협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토너먼트 방식

2. 예선 리그 후 토너먼트 방식
3. 리그 방식
4. 기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결정

제24조 (대회 운영) 주최 단체등은 대회의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5조 (소청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협회는 심판의 판정에 대한 소청, 경기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이 불리했다고 느껴 어떤 팀이 제기할 수 있는 소청 등 경기와 관련된 소청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대회기간 동안 소청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절차는 IWBF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소청공탁금) 협회가 승인하는 장애인농구대회의 소청공탁금은 50만원으로 한다. 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소청공탁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상업적 권리) ① 주체 단체등은 방송중계권 판매, 광고 판매, 후원사 선정, 입장료 징수 등 모든 상업적 권리에 대하여 협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최, 주관, 후원 단체등은 상업적 권리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에 유해한 상품 또는 그 제조회사를 대회명칭으로 채택해서는 안 되며, 경기장 내에서 해당 상품의 광고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8조 (경비의 부담) ① 주최 단체등은 대회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② 주최 단체등은 주관, 후원 단체등과 함께 경비의 분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 (참가비의 징수 및 보조) 주최 단체등은 필요할 경우 참가팀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징수하거나 참가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 (참가팀을 위한 지원) 주최 단체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 제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1. 참가 팀을 위한 연습장(공간) 확보
2. 참가 팀의 숙식, 이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대회조직위원회 및 다른 참가팀들의 연락처 제공

4. 참가팀에 대회 공인구 및 연습구 지원

제31조 (대회 사용구) 대회사용구는 당해 연도 협회의 승인을 받은 공인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대회 홍보) ① 주최 단체등은 대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한다.

② 주최 단체등은 경기 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언론사 및 각종 매체에 홍보한다.

제33조 (개회식 및 폐회식) ① 필요시 개회식과 폐회식 개최에 대한 사항을 대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참가팀 전원 개회식 참석을 의무로 하며, 팀원 중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팀당 최소한 5인 이상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34조 (의료 지원) ① 선수의 부상 치료를 위하여 해당 지역 병원 등을 활용하여 의료지원자 및 구급 차량을 배치한다.

② 대회기간 중 부상을 당한 선수의 치료비는 지정된 병원에서 우선 치료하고, 추후 일정액 범위 내에서 주최 단체등이 부담한다.

제35조 (시상) 주최 단체등은 대회 종료 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상을 실시한다.

1. 단체상 : 우승, 준우승, 3위
2.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Best 5, 우수심판상, 우수등급분류사상, 우수지도자상 등
3. 개인기록상 : 득점상, 리바운드상, 어시스트상 등
4. 대회조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상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 (만족도조사) 주최 단체등은 대회 중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해 대회운영평가 및 차기대회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사본 1부를 협회에 제출한다.

제37조 (결과보고서) 주체 단체등은 대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회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시행세칙)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 및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

계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5월 20일 개최된 대한장애인농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